

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안내

■ 서류접수 유의사항

- 서류접수 방문기간
 - 당첨자 : 10월 16일(월) ~ 10월 18일(수) (3일간) 10:00~17:00 [대표번호(1600-5727)를 통한 전화예약 필수]
 - ※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(23.09.15)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제반서류 상 등재된 모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, 세대주 등록 또는 변경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, 주소변동사항 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구성일 및 사유, 발생일 등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 - ※ 계약체결 이전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고 부적격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 - ※ 자격검증서류 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,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.
 - ※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.
 - ※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일정기간 보관후 파기합니다.

■ 다자녀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 (해당자)			
공동 서류	○		신분증	본인	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※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)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주택공급신청용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및 계약 불가
	○	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,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	○		배우자	•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(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)
	○	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 및 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혼인관계증명서(상세)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 뒷자리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,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~입주자모집공고일로,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"Y"로 설정하여 발급
	○	복무확인서	본인	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-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 •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- 군복무기간 25년 이상을 명시	
다자녀 특별공급		○	주민등록표등본(상세)	직계비속	•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
		○	주민등록표초본(상세)	피부양 직계존속	•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경을 인정받고자 하나, 주민등록표상 주택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"전체포함"으로 발급 요망
		○	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배우자	•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 된 경우 •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 한 경우(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안함) ※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 전부공개 "상세"로 발급
		○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• 만 18세인 직계비속을 미성년자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"상세"로 발급
		○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• 공급신청자가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 제3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
		○	임신진단서 또는 출산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임신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※ 임신진단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(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)과 임신 주차 기재 필수
		○	임신증명 및 출산 이행 확인각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접수장소에 비치
	○	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	본인 (또는 배우자)	•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	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	○		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	해당주택	•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물확인서, 건축물철거명실신고서 등 • "소형·저가주택등"임을 증명하는 서류(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) •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	○		당첨사실 소명자료	본인	•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요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
대리인 신청시 추가서류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본인	•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[용도 : 위임용(본인 발급용)] ※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
	○		위임장	본인	•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 (건본주택 비치)
	○		신분증 및 인장	대리인	•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(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) •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(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)